

# 산재보상실무 사례연구

이번 호에서는 업무상 재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행정해석과 판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1. 업무상 재해

### 가. 업무상 재해의 판단 요건

우리나라의 산재법 제정 당시에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이 요건주의」를 업무상 재해판단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1. 12. 17개정시에 「이 요건주의」를 삭제하고 “업무상의 사유”라고 하는 포괄적 단일요건의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업무상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이 요건주의」가 법규정에서 삭제되었다고 하여 「이 요건주의」 자체가 불필요한 개념이라는 뜻은 아니다. 즉, 법령의 규정이 현실의 모든 재해를 완벽하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규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근거로써 「이 요건주의」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 (1) 업무수행성의 개념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수행성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지배관리에 의한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에 부수해서 기대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즉, 작업 중은 물론 작업 준비 중, 작업종료 전후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성이 있으면 그 반증사유가 없는 한 업무기인성은 추정되므로 업무수행성은 업무상의 제1차적인 판단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업무수행성은 업무기인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내지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2) 업무기인성의 개념

“업무기인성”이라 함은 업무와 재해, 즉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든가 또는 재해발생의 원인이 된 상황 하에서 “그와 같은 업무에 종사한다면 당해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인정될 때에 업무기인성은 인정된다.

특히 업무기인성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주요학설과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 < 업무상 재해인정요건과 재해유형 요약 >

구분	업 무 수 행 성	업 무 기 인 성
재해 인정 요건	① 업무수행성(in the course of employment)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① 업무기인성(out of employment)이란 재해가 업무와 인과관계를 가지고 발생한 것을 말한다.

구분	업 무 수 행 성	업 무 기 인 성
재해 인정 요건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호에서는 이에 관해「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소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 제2호·제3호에서는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다만, 그 사고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니어야 한다.
재해 유형	①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중에 있을 때 ②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지만 사업주의 관리를 떠나 업무를 수행하는 때(예 : 출장중이나 사업장 밖의 외근 등) ③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만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때(예 : 회사주관의 운동경기, 야유회 등) ④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고 또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예 : 출·퇴근이나 휴식 중 사용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 등)	① 업무상 질병 : 근로자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는 경우에 질병에 이환되는 경우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 간에 의학적으로 관련성을 갖고 질병에 이환되는 경우 ② 과로사 : 개별근로자로서 과중한 정신적·신체적 부담에 따른 피로의 축적으로 야기되는 생명유지기능이 과로로 인한 사망(뇌혈관질환·허혈성 심장질환 등) ③ 직업병 : 작업 고유의 환경이나 작업방법의 특수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신체에 장애를 초래하게 되어 생기는 각종 질병 ④ 진폐증 : 본인의 종류에 관계없이 여하한 분진이든 폐 조직에 침착된 분진이 조직반응 즉, 병리적인 변화
양자의 관계	① 업무수행성은 업무기인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② 업무수행성이 있는 한 업무기인성은 그 반증의 사유가 없는 한 추정되므로, 업무수행성은 업무상의 제1차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 행정해석 및 판례

- ①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업무 시간 중 또는 그 전·후에 휴식하는 동안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 1993. 3. 12, 92누 17471)
- ② 경비원이 순찰 중 계단에서 넘어져 뇌실질 내 출혈 및 혈종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1981. 3. 23, 재심사례 제81-19호)

나. 업무상 재해의 기본원칙

(1) 업무상 사고(규칙 제32조)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의 요건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 ②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③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해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㉕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중인 환자

## (2) 업무상 질병(규칙 제33조)

① 근로자가 질병에 이환되는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㉔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을 것

㉕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근무기간·폭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㉖ 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㉗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㉔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 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㉕ 부상의 원인·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㉖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3) 작업 시간 중 사고(규칙 제34조)

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 시간 중에 다음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㉔ 작업

㉕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㉖ 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①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 ■ 행정해석 및 판례

① 운전기사의 혈압이 평소에도 높았다고 하더라도 평소 피로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겹쳐서 혈압이 상승되어 갑자기 뇌졸중을 일으켜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사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 1977. 2. 22, 76다 2533)

② 회사의 근무명령지시를 위반하고 음주한 후 취중에 화장실을 가는 도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이탈행위가 되므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이 때에 작업 중이라는 의미는 근로자가 담당업무의 수행뿐만 아니라 사업주 또는 노무관리를 위임받은 자의 지시에 의한 행위중도 포함한다.(1983. 9. 26, 보상 14987-4358)

- ③ 휴무일에 출근하여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는 비록 정규업무시간 이외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사적인 행위가 아닌 차량운행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업무에 수반되는 준비행위이므로, 비록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 할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다.(서울고법 1995. 6. 15, 94구 4631)
- ④ 건축공사장의 인부가 작업을 마치고 계단을 올라 오던 중 계단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떨어져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서울고법 1993. 7. 16, 92구 32815)

**(4) 작업시간외 사고(규칙 제35조)**

- 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 시간 중 사고(규칙 제3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위 (3)①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장비 등을 포함한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 중에 발생할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써 작업장소(인근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근로자의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고 있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사적행위를 하고 있을 때
- ⑧ 근로자가 작업시간외의 시간 중에 사업장내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 때
- ⑨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거나 출·퇴근 중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 ⑩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써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닐 것('99. 10. 7 개정)

**■ 행정해석 및 판례**

- ① 근로자가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왕복 6차선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통근버스에서 5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 1996. 3. 8, 94누 15639)
- ② 근로자가 퇴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것으로서, 비록 그 차량이 회사의 차량관리규

정에 따라 회사에 등록되고, 회사가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더라도, 근로자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 1995. 9. 15, 95누 6946)

- ③ 근로자가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이던 승합차를 타고 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퇴근도중 동료들과 함께 포장마차에 들러 술을 마신 후, 그 이후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지법 1995. 12. 21, 95가합 84156)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차량을 이용하여 통근도중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이용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간주하고 있다.(1990. 8. 27, 보상 01254-11902)

**(5) 휴게시간 중 사고(시행규칙 제35조의 2)**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본다. 다만, 취업 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해석 및 판례**

휴게시간중의 근로자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 시간 중에 사업

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 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판 1997. 6. 25, 96누1766)

**(6) 출장 중 사고(규칙 제36조)**

- ①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 ㉡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 ㉢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①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외근근로자)가 최초로 직무 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①의 규정을 준용한다.

■ 관련판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일 경우에는 그 용무의 수행여부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 1985. 12. 24, 84누 403)

(7) 행사 중 사고(규칙 제37조)

- ①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행사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 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 ㉡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 ㉢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 ㉣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써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②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 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의 규

정을 준용한다.

- ③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작업시간중의 사고(제34조) 및 출장 중 사고(제3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 관련판례

- ① 회사직원 중 일부가 자신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스로 비용을 각출하여 야유회를 갖고, 또 야유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회사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야유회의 참가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또는 회식이 업무의 연장 또는 업무의 원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참석자들이 사적 내지 자의적인 유희행위에 지나지 않을 경우에 그 회식에 참가 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대법 1992. 7. 20, 92누 6280)
- ② 회사의 이사인 40세의 신체 건강한 남자가 잦은 공사현장출장 등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평소 회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을 접대하기 위해 골프를 치다 심장마비로 돌연사 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서울고법 1994. 6. 14, 93누 25785)
- ③ 사용자가 주재하던 정례회식을 마친 다음, 근로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대법 1995. 5. 26, 94다 605090)
- ④ 노동조합의 연장사업계획에 따라 임금단체 협상을 앞두고 근무시간 종료 후에 노동조합 간부의 단결을 과시하기 위하여 개최된 체육대회 도중에 입은 부상은 업무상재해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대법 1997. 3. 28, 96누 16179)

**(8) 기타 사고(규칙 제38조)**

- ①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 ㉠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
  - ㉡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②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작업시간중의 사고(제3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상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 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 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 **관련판례**

- ①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 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 1995. 1. 24, 94누 8587)
- ②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동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대법 1991. 11. 12, 91누 5624)

**(9)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규칙 제39조)**

- ①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 외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관련판례**

- ①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에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 일어났다 하여도, 이를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 1991. 8. 27, 88누 5013)
- ② 사망의 선행 및 중간사인이 밝혀지지 않고 다만, 직접사인이 심장마비로 추정될 뿐인 사실을 인정하여,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망인이 평소 담당하던 업무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보여지지 않으며, 그 사망원인도 알 수 없으므로 그 사망은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 1994. 11. 11, 94누 10580)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

###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 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 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근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 중 뇌실질 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지 아니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나. 가목 (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다. 가목 (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 2. 물리적인 인자로 인한 질병

물리적인 인자에 노출되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전안부(前眼

部)질환 또는 피부질환

나. 적외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망막화상, 백내장 등의 안질환 또는 피부질환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망막화상 등의 안질환 또는 피부질환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백내장 등의 안질환

마. 유해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급성방사선증·피부궤양 등의 방사선 피부장·백내장 등의 방사선 안질환·방사선 폐렴·재생불량성빈혈 등의 조혈기능장애 골괴사 또는 기타의 방사선장해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화상

아.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의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동상

### 3.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잠수작업, 잠함실내근무, 고공근무 등으로 대기압보다 높거나 낮은 환경악조건에 폭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 조건에 노출된 후 6시간 내지 12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장해

(1) 폐·중이·부비강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또는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에 의한 압착증

(3) 질소마취현상 또는 중추신경계 산소독성으로 속발된 건강장해

(4) 피부·근골격계·호흡기·중추신경계 또는



내이 등에 발생한 감압병

-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생전증
- (6) 기흉·혈기흉·종격등·심낭 또는 피하기
- (7) 배부·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고압노출 작업환경에 2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골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증, 간염, 류마티스성관절, 고지질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증후군, 결절성 다발성동맥염, 알칼토뇨증 및 약물치료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 4.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1)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한 귀의 청력손실에 40dB을 초과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에서 “소음”이라 함은 근로자의 귀 위치에서 85dB(A)내외를 말한다.

나. 난청의 측정방법

(1)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 후,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써 방음시설이 잘 된 청력검사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500(a), 1,000(b), 2,000(c) 및 4,000(d)헤르쯔의 주파수 음에 대한 청력을 측정하여 6분법(a+2b+2e+d/6)으로 판정한다.

(2) 청력검사는 최소 3회 이상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에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한다.

#### 5.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가.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다만, 선천성이상·류마티스관절염·퇴행성질환·통풍 등 업무상 질병에 의하지 아니한 장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육·건·골격 또는 관절의 질병

(2) 내장탈(장기 또는 조직의 일부가 자기의 위치에서 다른 부위로 이탈하는 증상)

(3) 경견완증후군으로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질병

① 경추부의 신경 또는 기능장해

② 견갑부의 극상근증후군·건초염·활액낭염

③ 상완 및 전완부의 상과염을 포함한 건초염·수근관증후군

④ 수지의 압통과 부종을 동반한 운동기능 장애

나. 가목 (3)에서 “경견완증후군”이라 함은 상지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경부·견갑부·상완부·주관절·전완부 및 그 이하에서 발생한 근골격계질환을 말한다.

#### 6. 진동 장애

착암기, 병타기, 동력사슬톱 등의 진동공구를 취급하여 신체 국부에 진동폭로를 받는 업무에 상당 기간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손가락이나 팔목 등에 저림, 통증, 냉감, 뼈근함(뻣뻣함) 등의 자각증상이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장애가 나타나거나 그중 어느 하나가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

- (1) 수지·전완 등의 말초순환장애
- (2) 수지·전완 등의 말초신경장해
- (3) 수지·전완 등의 골·관절·근육·건 등의 이상으로 인한 운동기능 장애나, 레이노현상의 발현이 인정된 질병

### 7. 요통

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요부의 부상(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한 배부·부조직의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요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수행 중에 돌발적으로 가하여져서 발생한 요통
- (2)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

나.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 3월 이상)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10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방사성학적 소견상 변형척추증, 골다공증, 척추분리증, 척추체전방전위증 및 추체변연융기 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나목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kg이상의 중량물을 근로시간의 1/3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kg이상의 중량물을 근로시간 1/2 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 8.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가. 아연, 구리 등의 금속흡으로 인한 금속열
- 나. 불소수지, 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로 인한 안점막의 염증 또는 기도점막의 염증 등의 호흡기질환
- 다. 검댕, 광물유, 옷, 시멘트 등에 의한 봉와화 직업·습진 기타의 피부질환
- 라. 검댕, 타르, 피치, 아스팔트, 광물유, 파라핀 등으로 인한 원발성상피암
- 마. 목재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의한 알레르기성비염, 기관지천식 등의 호흡기질환
- 바.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증

### 9. 염화비닐로 인한 증상 또는 그 속발증

가. 염화비닐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간비장증후군
- (2) 지골단 용해증
- (3) 경피증
- (4) 레이노증후군

나. 염화비닐에 폭로되는 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원발성간혈관 육종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0. 타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타르에 폭로되는 업무에 2개월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타르외의 원인에 의한 피부질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접촉성피부염
- (2) 광과민성피부염
- (3) 피부색소이상
- (4) 좌창성피부질환
- (5) 국소모세혈관 확장증
- (6) 피치사마귀

나. 타르에 폭로되는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원발성 폐암
- (2) 원발성 피부암(원발성상피암)

### 11.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폭로되는 업무에 2월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뇌혈관장애, 일산화탄소 중독후 후유증, 뇌염 또는 뇌염후유증, 다발성경화증, 윌슨병, 척수소뇌변성증, 뇌매독 및 원인에 명확한 말초신경염 등 망간 외의 원인에 의한 질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신신경증상
- (2) 추체외로증상(파킨슨병)

나.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되어 나타나는 급성장해로 폐렴의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2.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연을 제외한다)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연창백, 연선, 복부신통, 상습변비, 관절통, 근육통, 신경과민 및 말초신경장애 등 연중독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 2가지 이상 나타나는 경우

나. 빈혈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다. 신근마비가 나타나는 경우

라. 혈중 연농도가 혈액 100ml중 60 $\mu$ g이상 검출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혈중 연농도가 60 $\mu$ g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요중연, ZPP,  $\delta$ -ALA 등의 검사결과에 의한다.

### 13.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그의 증기나 분진 등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서 떠난 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가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전신마비, 알코올중독, 망간중독증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정신신경질환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단백뇨 등 신장질환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국소 또는 전신진전, 보행장애, 말하는 기능의 장애 등 신경계증상 또는 감정의 항진, 성격변화 등 정신장애가 인정되는 경우

나. 궤양성구내염, 과도한 타액분비, 치은염, 치주농양 등의 구강내질환이 인정되는 경우

다. 안과용 세극등 검사에서 수정체 전면에 적회색의 침착이 일측 또는 양측성으로 확인될 경우

라. 단백뇨 등 신장장애가 인정되는 경우

마. 대량 또는 농후한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의 증기나 분진 등에 폭로되어 한기·고열·치조농루·설사·단백뇨 등의 신증상 또는 기타의 급성 중독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 14.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의한 중독증 또는 그 속발증

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폭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흡연 등 크롬 또는 그 화합물이 아닌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비중격궤양 및 천공, 크롬에 의한 기관지천식 등 비강 및 호흡기질환
- (2) 크롬으로 인한 자극 또는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 (3) 결막염·결막궤양 등의 눈장애
- (4) 구강점막장해 또는 치근막염

나. 크롬산 또는 중크롬산과 그 염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원발성 폐암
- (2) 비강·부비강·후두의 원발성암

다.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되어 나타나는 급성장해로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급성 호흡기 질환
- (2) 신장장해, 간장장해 등 급성 중독

#### 1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폭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세뇨관성 신질환
- (2) 만성 폐질환

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화학성 폐렴
- (2) 급성 위장관계질환

#### 16. 벤젠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벤젠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혈액질환과 피부질환의 경우에 소화기질환, 철분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및 만성소모성질환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 (2)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재생불량성빈혈
- (3) 급성 또는 만성 피부염

나. 대량 또는 고농도의 벤젠증기를 흡입하여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흥분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섬망, 혼수상태 기타 급성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7.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 중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지방족 및 방향족화합물 중 유기용제(톨루엔, 크실렌, 스티렌, 사이클로헥산, 노말헥산 등)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급성 또는 만성 피부염
- (2) 결막염, 각막염 또는 비염 등의 점막자극질환
- (3)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 간질,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및 동맥경화증 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4) 말초신경장해. 다만, 당뇨병, 알코올, 척추손상, 납, 비소, 아크릴아미드, 이황화탄소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5) 간장장해. 다만, 바이러스성 간염, 알코올성 간염 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6) 신장장해. 다만, 고혈압, 당뇨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나. 고농도의 유기용제를 대량 흡입하여 의식장해, 경련 기타 급성 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8.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트리클로로에틸렌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또는 그 업무를 떠난지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급성 또는 만성 피부염(건조성, 구열성 등)

(2) 결막염 또는 비염 등의 점막자극질환

(3)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 간질,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및 동맥경화증 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4) 말초신경장해. 다만, 당뇨병, 알코올, 척추손상, 납, 비소, 아크릴아미드, 이황화탄소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이 아니어야 한다.

(5) 간장장해. 다만, 바이러스성간염, 알코올성 간염 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6) 신장장해. 다만, 고혈압, 당뇨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나. 고농도의 트리클로로에틸렌에 폭로되어 의식장해, 보행장해 등의 중추신경장해 또는 호흡기장해 등 기타의 급성중독 또는 그 속발증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9. 디이소시아네이트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디이소시아네이트(TDI·MDI·HDI 등)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내인성천식 또는 다른 항원물질에 외인성천식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피부염 또는 알레르기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나.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안질환

다. 기관지염 또는 과민성폐장염 등 호흡기질환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특이항원(Specific IgE)이 발견되고, 작업에 따른 최고 호기 유속의 변화를 나타내며, 메타콜린 유발시험에 양성인 기관지천식

마. 원이물질에 의한 유발시험양식인 기관지천식

### 20. 이황화탄소(CS<sub>2</sub>)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가. 10ppm내외의 CS<sub>2</sub>증기에 폭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망막의 미세혈관류, 다발성뇌경색증, 신장조직검사상 모세관간사구체경화증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 고혈압, 혈관장해 등 CS<sub>2</sub>외의 원인에 의한 질병을 제외한다.

(2) 미세혈관류를 제외한 망막병변, 다발성 말초신경병변, 시신경염, 관상동맥성 심장질환, 중추신경기능장해 또는 정신장해 중 2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 고혈압, 혈관장해 등 CS<sub>2</sub>외의 원인에 의한 질병을 제외한다.

(3) (2)의 장해 중 1가지가 있고, 신장장해, 간장장해, 조혈계장해, 생식계장해, 감각 신경성 난청, 고혈압증 중 1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나. 20ppm이상의 CS<sub>2</sub>증기에 2주 이상 폭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의식혼탁, 섬망, 정신분열증 및 조울증과 같은 정신이상증세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대량 또는 고농도의 CS<sub>2</sub>증기에 폭로되어 의식장해 등의 급성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21. 석면으로 인한 질병

석면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석면폐증

나. 원발성 폐암 또는 악성 중피종 중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

(1) 석면폐증과 동반한 경우

(2) 늑막비후, 초장성비후, 판상석회화, 담액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를 동반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3) (1) 또는 (2)의 소견은 없지만 석면에 10년 이상 폭로된 경우. 다만, 폭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흡연력, 석면폭로력, 폭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참작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2.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전염성 질환

나. 동물이나 짐승의 털 기타 동물성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브루셀라증, 탄저병, 단독, 폐

스트, 두창

다. 옥외 노동에 기인한 양충병

라. 습윤지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와일병

### ■ 관련판례

#### A. 업무상 재해의 개념 및 입증책임(대법 94. 1. 14 93누 149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해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B. 열악한 작업환경 중 초과·철야근무 등 업무과중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대법 93. 2. 9 92누 1649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신체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재자의 뇌경색증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초과 근로와 철야 근로 등 업무의 과중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됨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C. 진폐증으로 인한 정신이상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사망 해당 여부(대법 93. 5. 20 92구 33963)**

탄광의 선산부 광부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13여년간 요양하고 폐질등급 1등급으로 7여년간 장기간 동안 투병생활을 하여 심신이 극도로 쇠약하고, 진폐증이 악화되어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투신자살한 경우 이는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D. 과중한 업무수행 중 뇌경색증으로 쓰러진 경우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대법 93. 2. 12 92누 1655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에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시멘트 믹서공인 원고가 아파트 시공현장에서

통상 작업배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으로 무리한 작업을 하던 중 피로를 못 이겨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져 뇌경색증 판명을 받은 것은 평소보다 특히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써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 작업중 사고로 발생한 뇌경색의 경우(서울고법 93. 6. 10 93구 9615)**

시멘트 야적장 인부인 근로자가 사고 당시의 나이(61세), 작업내용 및 근무시간(일주일에 4일 정도의 연장근로), 작업환경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뇌경색은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축적된 육체적·정신적 피로 내지 위 사고로 노면에 머리부분을 부딪치면서 받은 충격에 의하여 발생되었거나 증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F. 원진레이온 근로자(방사과)의 이황화탄소 중독 후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서울고법 93. 3. 19 92구 9748)**

원진레이온의 이황화탄소 폴로 부서인 방사과의 근로로 인한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정신분열증을 치료받아 오던 중 그 정신분열증 자체의 하나의 증세인 자살기도증(정신과 영역에 있어서의 정신분열증환자의 자살은 대부분 충동에 의한 자살보다는 병이 호전되면서 자신에 대한 뚜렷한 삶의 제한을 인식하면서 행하는 자살이 많고, 자살의 시기적으로도 환자의 경우 급성기의 자살보다는 의학적으로 정신병 후의 우울상태의 자살이 많고, 또한 대부분 치료자나 가족에게 쉽게 자살 결행의지를 계속적으로 밝히다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자살에 대한 조심성이 떨어질 때 자살을 결행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 정신분열증 환자의 전형적인 증상임)에 의하여 신병을 비판하여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로 정신분열증과 자살 사이에는 서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결국 위 땅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G. 원래 임차버스가 아닌 직원 출퇴근용 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 회사측의 책임 여부 (대법 93. 6. 8 92다277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 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회사에 임대한 원래의 버스에 대하여 적어도 회사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에 있어서는 장기간 계속적으로 그 운행을 지배하여 왔다면, 비록 사고버스가 원래의 임차버스와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 측에서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한 대체 버스에 지나지 아니하여 회사로서는 사고버스를 애당초의 임차 목적대로 사용함으로써 여전히 사고버스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H. 사내에서 중식 후 동료들과 족구운동 중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갔다오던 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대법 93. 3. 12 92누 174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비록 근

로자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그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유발된 경우 또는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업무수행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업무시간 중 또는 그 전후에 휴식하는 동안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금형설계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세심한 주위와 정신집중을 요하는 데다, 사망할 무렵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로 미루어 볼 때, 사내에서 중식 후 동료 근로자와 족구운동 중 가슴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갔다 오던 중 사망했어도 (의학상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인한 급사) 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I.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 수행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대법 94. 2. 24 92구 2379)**

노동조합 업무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 업무수행 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